

# 대법원 2018도745

##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4. 24. 전 부산시장(피고인 허남식)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허남식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745 판결)

###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이우봉은, 2010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10. 5. 초순경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던 이영복에게 피고인 허남식의 선거캠프 자금 지원을 부탁하여, 이영복이 피고인 허남식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하기 위해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 원을 이영복으로부터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허남식에게 위와 같이 이영복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음
- 피고인 허남식은 그와 같은 피고인 이우봉의 보고를 받고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이우봉의 지역 언론인 접대 등 피고인 허남식을 위한 선거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영복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

#### 나. 소송의 경과

- **1심**은 '피고인 허남식에게 이영복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그 3,000만 원으로 지역 언론인 등을 접대하는 등 선거홍보비로 사용하는 데 피고인 허남식의 승낙을 받았다'라는 피고인 이우봉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
- **원심**은 피고인 이우봉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 허남식에 대하여는 전부 **무죄**를, 피고인 이우봉에 대하여는 제3자 뇌물취득의 범죄사실과 정치자금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8월 및 추징 3,0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이우봉이 피고인 허남식에게 3,000만 원 수수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
  - 피고인 이우봉이 내세우는 보고의 이유 내지 동기도 믿기 어려움
  - 피고인 허남식이 피고인 이우봉의 불법선거자금 수수 및 불법선거운동을 승낙할 이유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이우봉은 검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3,000만 원 중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1,8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
  - 그 외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우봉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

## 2. 대법원의 판단

### 가. 사건의 쟁점

- '이영복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 허남식에게 보고하고 그 3,000만 원을 부산지역 언론인들에 대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았다'는 피고인 이우봉 진술의 신빙성

### 나. 판결의 결과

-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검사와 피고인 이우봉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 판단의 근거는 원심과 같음

### 3. 판결의 의의

- ▣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이우봉이 피고인 허남식에게 금품수수 사실을 사후보고하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피고인 허남식의 승낙까지 받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임